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의료, 교육, 문화, 행정서비스, 치안, 노인문제 등을 포괄하는 농어촌복지정책을 장·단기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도록 관련기구 설치 및 재원 확보 등이 명시된 특별법 제정만이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수준을 단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1. 왜 농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가.

도하개발아젠다(DDA) 체결 이후 국내농업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안식처인 농어촌 역시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소득과 열악한 복지수준으로 농어촌공동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도시와 농어촌간의 소득 격차보다 더 심각한 것이 도·농간의 복지시설의 일방적인 편재 및 ‘삶의 질’의 불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불균형은 갈수록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개방화의 붓물이 터졌던 UR협상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UR 협상 타결 이후 정부의 일관된 농촌복지정책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의료기관 통폐합 등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규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을 간과한 채 ‘규모화’만을 강조한 복지정책의 결과는 오히려 농촌을 ‘복지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었으며, 이는 또 다시 이농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말았다.

이미 복지 선진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 십년전부터 농어업의 경우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적 가치를 뛰어넘어 국가차원에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어업·농어촌·농어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농촌지역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왔다.

작년 11월에 채택된 WTO 각료선언문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고려대상’으로 일정부분 반영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UR 협상 이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환경보전, 정서순화 등 농촌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왔는가는 의문시된다.

우리 헌법에는 “만민이 평등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420만 농어민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언제나 ‘인내’와 ‘희생’만 강요받아왔다. 이에 한농연은 농어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통해 찾아 나갈 것이며, 사회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2. 지금 농촌복지의 실태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농촌의 복지수준은 도시지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다. 주요 부문별 복지지표를 살펴보다도 도·농간의 복지수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대비한 농가 소득 수준은 약 8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의료 및 문화시설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은 도시가 약 97%인데 반해 농촌은 44%, 하수처리율도 도시는 77%인데 농촌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공동화의 실태는 또 어떤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농어촌지역의 학생수는 66%나 줄고 교원수는 51%나 감소해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2001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1만6천499개 유·초·중·고교의 44.1%인 7천272개교가 농어촌지역에 있지만 교원수는 전체 교원의 23.3%인 8만6천79명, 학생수는 16.8%인 140만4천789명에 불과할 정도로 농어촌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건강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농협에서 발표한 종합건강검진 결과는 농촌지역의 의료 실태를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협공제를 계약한 농업인들을 표본모델로 23개 항목에 대한 종합검진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2,394명 가운데 98% 가량이 각종 질병이

의심되는 유소견자로 판명되었으며, 특히 간이나 신장 등을 진단하는 초음파검사에서 남자는 854명 중 476명이, 여자는 1,482명 중 706명이 정상 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지금까지 농민들이 믿고 의지하던 보건지소는 90년대 초 1,318개소에서 2000년에는 1,269개소로 줄었고, 보건진료소의 경우 90년대초 2,039개소에서 2000년에는 1,906개로 무려 133개소나 감소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결국 열악한 의료환경속에 고통받는 농민들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배짱행정이며,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인 것이다.

3. 농어촌복지에 관한 요구사항은?

1)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라.

지금까지의 농어촌복지정책은 농어촌 교육·의료·복지 등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아 단발적이고, 전시성 행사에 국한되어 그 정책시행 효과가 크게 미비하였다. 또한 관련조직 및 정부 부처간 협력이 이루어 지지 않아 중복 투자와 혼선만 가중시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지금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최단기간내에 농촌지역의 복지수준을 도시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처방은 특별법 제정이 유일하다. 즉 의료, 교육, 문화, 행정서비스, 치안, 노인문제 등을 포괄하는 농어촌복지정책을 장·단기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도록 관련기구 설치 및 재원 확보 등이 명시된 특별법 제정만이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수준을 단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2) “농어촌복지공단”을 설립하라.

도시근로자들의 경우 전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근로복지공단(46개 지사)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420만 농어민들의 복지 증진(의료, 교육, 문화, 행정서비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준하는 “농어촌복지공단”의 설립은 열악한 복지여건 속에 있는 농어촌지역에 더욱 필요한 기구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농어민종합병원”을 건립하라.

농어촌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의 접근성 제고와 의료의 질 향상이 시급한 과제이다. 사실상 농어민들의 경우 여러 제약으로 인해 거리가 가까운 병원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통폐합은 이러한 농업인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민간병원의 유치에 한계가 분명한 만큼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방문보건사업 및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농촌에 시급한 진료부문의 확대와 농부증 등 특수질병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농어업의 경우 타 산업보다 노령층이 많고, 작업 특성으로 인해 농부증 등 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필요한 상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확보하여 각 도단위별로 농어민종합병원을 건립하여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4) 교육기관 정비 및 시설 확충으로 농촌 교육

여건 개선하라.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이농의 주 요인으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 그 개선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녕 농어촌교육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농어촌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문제 차원이 아닌 농촌경제와 가정문제, 도시문제 등과 맞물린 복합적인 측면에서 정책 입안이 되어야 하며, 농어촌 근무 교사에 대한 각종 지원책(인사, 급여, 병역특례 등)과 농촌지역 교육투자에 교육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중앙정부의 발상전환이 관건이다. 결국 학교의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라 도시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도시지역의 학생들까지도 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 지원, 특성화방안 등이 절실한 것이다.

5) 노후생활보장 등 종합적인 노인문제 해결대책을 마련하라.

농촌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인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41%로 크게 늘어났으며, 60세 이상의 농가 경영주의 비중이 55%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이제 농촌지역의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후생활 보장 및 노후연금제도 개선과 도시지역의 노인복지개발 프로그램을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4. 한농연은 이렇게 추진한다.

1)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기구 구성

- 1단계: “한농연 대선공약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운동 특화

- 2단계: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0000인위원회” 구성

* 각계 각층의 사회 저명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사회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킴 **한농연**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기구 구성(안)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0000인위원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한농연, 농민단체, 농협, 정부 관련 부처, 사회단체, 국회의원, 정당, 언론,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저명 인사 총 망라 • 역할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향 기초논의 및 자문, 사회공감대 형성유도, 특별법 제정운동 추진 | |
| 한농연 대선공약기획위원회 | 대선공약 실무추진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중앙 정책부회장 및 도 정책부회장단 • 역할 : 특별법 제정운동 및 사업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한농연 사무총국 • 역할 : 특별법 제정운동 방안 마련 및 관련 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실무추진 |

2) 특별법 제정운동 진행 계획

| 기 간 | 주요 추진 활동 |
|-------|--|
|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000인위원회” 구성(3월 초) - 전국단위 현수막 걸기 운동(3월 초)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 담화문 발표 및 전국단위 부착(3월 중) - 신문 광고(3월 초)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 선포 및 기자회견(3월) |
| 4월~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4월 중순)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농촌복지문제의 실태 대국민 홍보, 회원 관심 고조 및 범조성) - 농어민 기본권리찾기 운동전개(한농연 조직 활용, 전국단위 범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복지· 환경 기반시설 개선요구(교통 교육시설 확충, 보건소, 치안, 체육문화시설 확충 등) · 농어촌복지 투자확대요구(복지정책예산 증액,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직불제 확대 등) |
| 이 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 공약포함 관철 운동 전개 - 특별법제정안 국회 청원(6월 이후) |